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의안번호	510
------	-----

2023.03.10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6일, 이종환 의원(찬성자 16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】

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3.2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관광체육국장 김영환)

#### 1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바,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)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<sup>1)</sup>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서울시체육회 · 장애인체육회 재정운용 현황

-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(시 체육회)와 시체육회의 하부조직(구 체육회)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임의단체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 6월부터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법인화되었음.
- 임의단체의 경우, 법인격의 부재로 재산권 행사 및 공모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법인화를 통해 법적 지위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, 공모사업 참여, 수익시설 운영, 후원지원 확대 등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가능성이 생겼음.

- 하지만 독립법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여전히 2023년 기준 총 예산 642억 9천4백만원 중 자체예산은 82억 7백만원에 불과하며, 재정자립도가 12.8%에 그치는 등 뚜렷한 재원 안정화 확보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.
-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에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취약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전히 회장으로 있으며 독립법인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되지 않는 상황임.

#### 다. 운영비 지원 의무화(안 제18조)

- 안 제18조(지원사업)에서 시장이 전문체육,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,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서울특별시체육회</u> , <u>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</u> ,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8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서울특별시체육회</u> , <u>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</u>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현재는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, 그 밖의 체육단체

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

관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(2022.8.시행)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.

- 운영비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인건비, 사무관리비, 임차료 등이 포함됨.

#### 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**제3조(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)**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인건비
2. 사무관리비
3. 임차료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- 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그 밖의 체육단체의 경우, 운영비 의무지원 근거가 없으며, 체육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만이라도 보조하도록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.
- 이처럼 법·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서울시를 통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, 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기본경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위탁사업 확대, 수익사업 다각화 등 재정자립도 재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10
----------	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의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성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기덕,  
김원중, 김원태, 남창진,  
문성호, 박영한, 아이수루  
, 유정희, 윤종복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원형, 이종배,  
이효원 의원(16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,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(지원)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,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서울특별시체육회</u> , <u>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</u> ,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8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<u>서울특별시체육회</u> , <u>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</u>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